



NO. 2017-ETC-05 (K)

KR
KOREAN REGISTER OF SHIPPING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Republic of Korea

Phone : + 82-70-8799-8343
Fax : + 82-70-8799-8339
E-mail : conaudit@krs.co.kr
Date : 25 July 2017

Person in charge: Jeong, Minyoung

제목: TMSA, RIGHTSHIP 및 ISM에서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가이드라인

1. 개요

1) MSC 96에서는 MSC.1/Circ.1526으로 해상 사이버리스크 관리에 대한 임시 지침을 처음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MSC 98에서 ‘해상 사이버리스크 관리에 대한 지침에 관한 회람서’(MSC-FAL.1/Circ.3)가 승인되었고 미국의 제안으로 기국들에게 안전관리시스템에 사이버리스크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권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TMSA3 (Tanker Management and Self-Assessment)

OCIMF에서는 기존 TMSA2 효율화 작업의 일환으로 KPI(성과지표) 및 BP(모범사례)를 최신화 하였으며,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Element 13(Maritime Security) 항목을 추가하여 TMSA3를 발행하였습니다.(2017.04.11)

3) RIGHTSHIP 검사 - INSPECTION AND ASSESSMENT REPORT FOR DRY CARGO SHIPS

RIGHTSHIP에서는 기존 선박 점검표(FOD06(10))에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추가 점검사항을 반영하여 RIGHTSHIP 점검표를 최신화(FOD06(11)/2017.05.11) 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선사에서는 사이버보안 리스크 관리를 선사 안전관리시스템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특히 상기 Oil Major 및 Rightship 심사/검사를 수검하는 선사는 추가된 사이버보안 관련 점검항목을 검토하여 선사 시스템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적용대상

- 1) ISM 적용대상 선사
- 2) TMSA3 수검 선사
- 3) 아래 RIGHTSHIP 대상 선박 및 관리 선사

- High Risk로 분류된 선박
- PSC detention 선박
- Owner and Technical manager change
- Major part repair and modifications
- 18년 이상의 All CAPE 선박
- 18년 이상의 All PANAMAX 선박
- 25년 이상의 All HANDY 선박
- Customer가 Inspection 요구한 선박 (톤수 제한 없음)

3. 시행일자

1) ISM 적용대상 선박 : 2021.01.01.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의 안전관리적합증서(DOC)의 첫 번째 연차심사일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에 사이버 리스크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기국들에게 권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임)

2) TMSA 3 : 2018.01.01.

OCIMF에서 TMSA 3 심사 적용일자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SIRE에 2018년 1월 1일부로 TMSA 3 자료만 업로드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어 2018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2018.01.01 이후

- TMSA 3 이용(Only)

② 2017.04.10 ~ 12.31

- TMSA 2 계속적인 사용 또는 TMSA 3 도입 중 선택

- TMSA 3 최초로 도입할 경우, 아래 2가지 중 택 1

▶ 빈 템플릿에 TMSA3 내용 입력

▶ 또는, 자료 이동(TMSA 2 → TMSA 3)

3) RIGHTSHIP 검사: 2017.05.11.

4. 선주 및 운항자 조치 사항

선주 및 운항자는 MSC 98, TMSA3 및 RIGHTSHIP의 사이버보안 관련 내용을 참조하시어, 사이버보안 방침, 절차, 지침, 위협식별, 담당자 교육 및 보안 시스템 점검 등에 대한 회사 시스템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5. 첨부자료

- 1) MSC 결의안 428(98) 안전관리시스템에서의 해상사이버리스크관리
- 2) TMSA3 및 RIGHTSHIP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끝-

정 부 대 행 검 사 본 부 장



배부처 : 선주 및 운항자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